

고 성 군 세 감 면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

(의안번호 제524호)

심 사 보 고 서

1998. 12. 24.

총 무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12. 11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1998. 12. 12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8. 12. 21 상임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사유

-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된 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감면기간을 연장코자 함.

3. 주요골자

-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 기준일로 부터 전액을 감면(공제)하는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함.(안 제24조의2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외환보유고 확보 및 IMF에 처한 국내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규정으로 경상남도 표준안 근거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 : 1998. 12. 2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